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30
------------	-----

2011년 2월 22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1년 2월 8일

다. 상정일자

- 제229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교통위원회(2011년 2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교통본부장 장정우)

가. 제안이유

-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자전거시스템이 여의도 및 상암동에 설치 완료된 바, 동 시설물에 대한 운영·유지관리 업무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대행사업)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위탁대상 시설물

구 분	시설물 내역
스테이션 분야	키오스크·거치대·받침대·CCTV 각 43대
자전거 분야	공공자전거 440대, 전기자전거 2대
운영센터 분야	관제·콜센터·유지보수센터내 시설물, 차량(1톤트럭) 2대

○ 시설물 사진 및 스테이션 위치도

<p>관제센터</p>		<p>여의도 스테이션</p>	
<p>공공자전거 스테이션</p>		<p>상암동 스테이션</p>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안석수)

- 본 동의안은 서울시가 영등포구 여의도 및 마포구 상암DMC 일대에 구축·운영 중인 공공자전거 시설물에 대한 운영·유지 관리 업무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대행사업)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참고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규정

<p>■ 제19조(대행사업)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 (개정 2010.04.22)</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③ 생략</p> <p>④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p> <p>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25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⑥ 공단은 대행사업에 따른 비용부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대행사업비의 원가를 산출할 수 있다.</p>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공공자전거 시설물 설치 이후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안정화 기간 동안에는 구축업체가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안정화기간 이후에는 공단 등에 위탁하기로 내부계획¹⁾을 마련한 바 있음

- 동 동의안은 서울시 산하기관인 공단이 공공자전거 시설물을 수탁 운영함으로써 공공자전거 관련 사업 확대시행시 각 자치구 및 서울시가 효율적인 통합 운영을 도모할 수 있고, 외부기관(구청, 경찰청 등)과의 유기적 협조 관계 유지, 다수 이용자에 대한 책임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당초 서울시가 수립한 “공공자전거 시스템 구축·운영계획(2009.2)”에 따르면 동 사업은 “민간사업자 선정이 불가능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위탁·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던 바, 민간위탁 계획에서 공단 위탁으로 변경하게 된 경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특히 현재 공공자전거 운영 시스템은 통신장비, 카드결제 시스템 및 각종 전자장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동 사업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분야의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설관리공단이 이를 직접 수행하기보다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관련 업체를 재선정하여 위탁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바,
 이는 궁극적으로 관리체계의 추가에 따른 운영비용 증가나 저가입찰경쟁에 따른 수탁업체의 관리소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공공자전거 관련 시설물 유지관리에는 통신장비, 카드결제시스템 등의 전자장비 관련 기술력이 필요한데 시설관리공단이 관련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가?(질의 : 이행자 의원)
- 시설관리공단은 교통정보센터 및 교통관련 시설물 운영 등을 통해 통신 및 전자 관련 기술력과 유지관리 노하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음(답변 : 도시교통본부장)
- 공공자전거 관련 시설물을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을 때의 장점이 무엇인가?(질의 : 박준희 의원)
- 현재 강남구를 비롯한 자치구에서 공공자전거 구축계획을 가지고 있는 바, 향후에 시설관리공단이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구축한 관련 시설들을 안정적으로 통합운영 할 수 있음(답변 : 도시교통본부장)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 서울시 도시교통본부(2010.10), “서울시공공자전거시스템 관리운영계획”

서울특별시 공공자전거 시설물 운영·관리 업무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동의안

의안 번호	230
----------	-----

제출년월일 : 2011. 1. 3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자전거시스템이 여의도 및 상암동에 설치 완료된 바, 동 시설물에 대한 운영·유지관리 업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대행사업)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려는 것임

2. 위탁내용

대상시설물

구 분	시설물 내역
스테이션 분야	키오스크·거치대·받침대·CCTV 각 43대
자전거 분야	공공자전거 440대, 전기자전거 2대
운영센터 분야	관제·콜센터·유지보수센터내 시설물, 차량(1톤트럭) 2대

시설물 사진 및 스테이션 위치도

관제센터		여의도 스테이션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상암동 스테이션	